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이대성* · 안영규**

요 약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Lee, Dae Sung* · Ahn, Young Kyu**

ABSTRACT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doesn't include investigation on important cases that could influence the security and existence of the nation that are the core jobs of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So the agency has a difficulty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crime of North Korea and other security incidents. It is also difficult to catch 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working in Korea. It also produces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investigating the illegal leak of strategic materials and investigating people related to illegal funding to international terrorism. So it is urgently needed to revise Financial Intelligence Law as soon as possible.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use the information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 in many different ways. National Security Agency of China and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 freely use the information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 based on their own laws and system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of USA and Secret Intelligence Service and Security Service of Britain request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to supply them with the information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 But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f Korea isn't able to approach to FIU and can't share the FIU information with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To solve the problem, they should revis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Law so that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can receive or request information from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ey Words: Terror, Terrorism, Counter-Terrorism,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접수일 2015년 9월 1일, 수정일(1차:2015년 9월 18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4일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저자)

**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공동저자)

1.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안보(security)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전통적 안보분야 이외에 경제, 생태, 사회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유권 분쟁, 자원 분쟁, 에너지 경쟁 등과 같은 비군사적 안보위협요인들이 급부상함에 따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경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제화·세계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자원·환경·생태 등의 비군사적 안보영역을 도외시킬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한국의 안보위협요인은 다음과 같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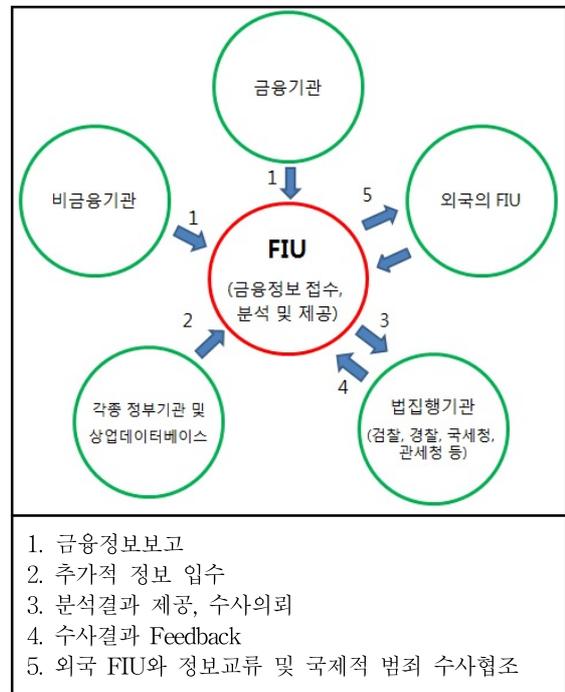
우선, 국제사회에서 비군사적 측면으로는 다국적기업·외국기업 등에 의해 최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기밀 등이 유출되는 산업스파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진출기업·교민·근로자·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한 준-테러리즘(quasi-terrorism)이 발생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으로는 알-카에다(Al-Qaeda),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등과 같은 테러단체에 의한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과 테러리즘(terrorism)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비군사적 측면으로는 중국 흑사회·일본 야쿠자·러시아 마피아 등의 국제범죄조직이 암약(暗約)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칭·비대칭 전력의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에 비군사적 측면으로는 간첩·좌익사범 등을 양성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리즘·불법무기거래·마약·위조지폐 등과 같은 국제성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 측면으로는 전자전(electronic warfare), 화학·생물·방사능 물질·핵무기(chemical·biological·radiological·nuclear)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증강, 국지적 무력도발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안보관련 범죄(security-related crime)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해외 금융정보기구와 국가정보기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금융정보기구(FIU)와 국가정보기관의 협력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금융정보기구(FIU)에 대한 검토

2.1. 금융정보기구의 개념

국제사회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금세탁방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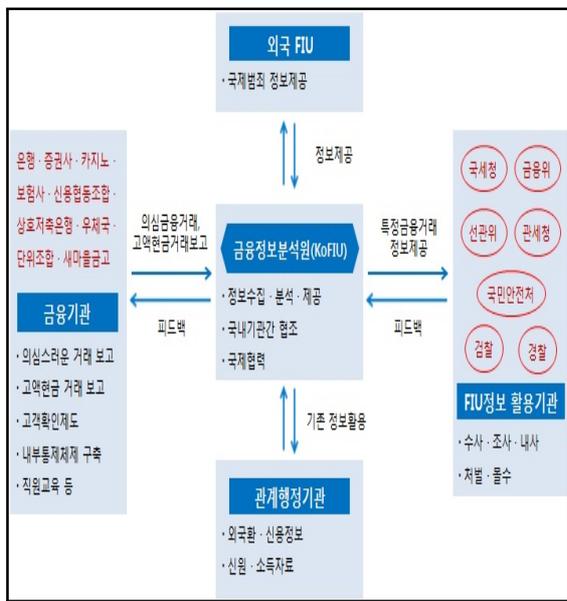
<그림 1> 금융정보기구(FIU)의 업무

1990년대 초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중앙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금융정보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가 설립되었고, 다수의 국가들도 FIU를 설립하였다. 1995년 금융정보기구의 비공식적 국제협력기구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이 결성되면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정보 교환의 장려와 지원을 통한 국제적 공조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에그몽 그룹은 각 국가의 자금 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討論)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2][3][4]

2.2.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역할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정보 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을 설치하였다.



<그림 2> 금융정보분석원(KoFIU) 운영 체계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 범죄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관련되거나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요청된 금융정보를 접수·분석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a central national agency)이다. 이러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불법자금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접수하고, 관련 국가기관 또는 외국 금융정보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입수 및 추가하여 총체적인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분석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이 포착된 거래에 대해서는 법집행기관 및 수사기관에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6].

3. 해외의 금융정보기구(FIU)와 국가정보기관의 협력 현황

3.1. 국가정보기관이 금융정보기구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국가

<표 1>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정보 활용

국가	국가 정보기관	금융 정보기구	법·제도적 근거
중국	국가안전부 (MSS)	反洗錢監測分析中心 (CAMLMAC)	반간첩법 형사소송법
호주	보안정보부 (ASIO)	거래보고 분석센터 (AUSTRAC)	반자금세탁 및 대테러 금융법
불가리아	국가안보청 (SANS)	국가안보청 (SANS)	SANS법

금융정보기구(FIU)의 특정금융정보를 국가정보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7].

우선, 중국의 국가안전부(MSS)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정보기구인 反洗錢監測分析中心(CAMLMAC)를 자유롭게 출입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테러리즘 및 간첩혐의자의 금융거래 등의 조사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보안정보부(ASIO)는 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의 컴퓨터망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보안 분야 수사를 위해 필요시에 영장청구 없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가리아는 2008년 국내정보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재무부 산하 경제·재무정보국(BFIA)에서 수행하던 금융정보 분석업무를 국가안보청(SANS)으로 이관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3.2. 금융정보기구가 국가정보기관에 정보를 통보하거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국가

<표 2> 금융정보기구에 의한 정보 활용

국가	국가 정보기관	금융 정보기구	법·제도적 근거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등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FinCEN)	에국법
영국	비밀정보부 (SIS) 보안정보부 (SS)	국가범죄 수사국 (NCA)	대테러법
프랑스	국내정보국 (DGSI) 해외안전국 (DGSE)	비자금경로 감시국 (TRACFIN)	재정화폐법
독일	연방정보부 (BND) 헌법보호청 (BfV)	연방범죄 수사청 (BKA)	×
캐나다	보안정보부 (CSIS)	금융정보 분석원 (FINTRAC)	대테러법
노르웨이	보안경찰청 (PST)	경제 및 환경 범죄수사국 (OKOKRIM)	검찰 훈령
덴마크	보안정보국 (PET)	경제·국제 중범죄 담당 검찰(SEC)	×

금융정보기구(FIU)의 특정금융정보를 국가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9].

첫째, 미국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정보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은 전면 접근이 가능하고,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 등은 개별적 요구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둘째,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NCA)은 테러리즘 관련 금융정보를 비밀정보부(SIS)와 보안정보부(SS)에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있으며, 보안정보부(SS)는 자체적으로 FIU팀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의 비자금경로감시국(TRACFIN)은 불법 자금세탁·테러리즘 자금 운용 사실 확인시에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국내정보국(DGSI)과 해외안전국(DGSE)에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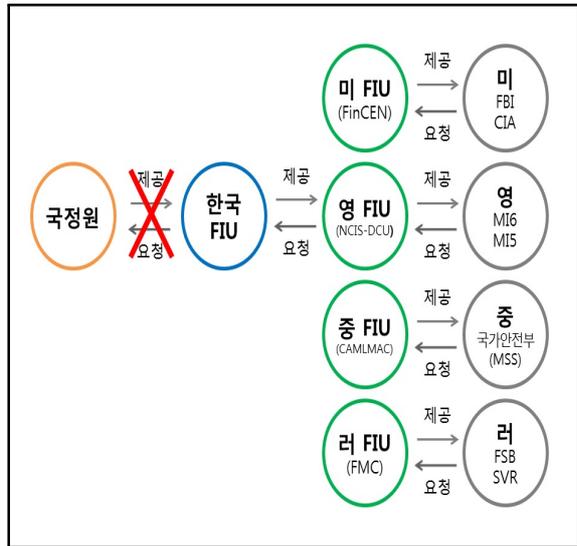
4.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국가정보기관의 한계

4.1. 금융정보분석원(KoFIU) 운용상의 문제점

한국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제27기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의장국으로서의 한국은 세계 각 국가의 자금세탁방지과 테러리즘 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제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한국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차 라운드 국제규범 이행여부 상호평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안보관련 범죄(security-related crime) 등에 대한 금융정보의 접근·이용 권한이 없으므로 인하여, 국제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방지 등을 위한 국제공조가 어렵기 때문이다[10][11].

4.2. 국가정보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의 FIU 정보공유 및 이용 상의 문제점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특별권고 사항 등을 통해 각 국가의 금융정보기구(FIU)가 테러자금 차단에 역점을 두도록 「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금융정보기구(FIU)와 국가정보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해외정보기관과는 대(對)테러리즘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금융정보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국제테러리즘 방지 및 공조와 관련된 실질적 이행과 동참에 소극적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과 이란을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가장 위험한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국가로 지목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금융정보 추적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지원 행위의 감시·차단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12][13].



<그림 3> 국가정보기관과 해외정보기관의 FIU정보 공유 현황

4.3.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제점

현행 「특정금융정보(FIU)법」은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에 금융정보 접근·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안위·존립에 관한 중대수사 관련 규정은 불비(不備)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첫째, 「특정금융정보(FIU)법」 제7조 제1항은 검찰총장에게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사할 경우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현행 「특정금융정보(FIU)법」 시행령 제12조는 금융정보분석원(KoFIU)장이 검찰총장·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른 금융정보를 경찰청장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범죄은닉규제법에서 불법재산으로 명기한 32개 법률 및 86개 범죄행위 수사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형법」 제5조 1·2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와 제81조의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관한 수사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존립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금융정보 접근과 이용 규정은 부재(不在)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

법」 제3조의 직무에 해당하는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검찰도 안보관련 범죄수사에 FIU 정보를 제대로 접근 및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정책적 제언

미국의 9.11 테러리즘 이후, 세계 각 국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특별권고와 필요성에 의해 금융정보기구(FIU)의 특정금융정보를 국가정보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국가정보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금융정보기구(FIU)가 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 라운드 평가를 앞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대(對)테러기관과의 정보공유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해당하는 안보관련 범죄(security-related crime)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게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특정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은 중국의 국가안전부(MSS), 호주의 보안정보부(ASIO), 불가리아의 국가안보청(SANS) 등과 같이 국가정보기관이 금융정보기구(FIU)의 특정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CIA), 영국의 비밀정보부(SIS)·보안정보부(SS), 프랑스의 국내정보국(DGSI)·해외안전국(DGSE), 독일의 연방정보부(BND)·헌법보호청(BfV) 등과 같이 금융정보기구(FIU)가 국가정보기관에 특정금융정보를 통보하거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제7조 1항의 정보제공 대상기관 및 범위에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에는 금융정보 접근·이

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안위·존립 등에 관한 중대사건 수사에는 이러한 규정이 불비(不備)하다. 이러한 흠결(欠缺)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내란·외환 죄, 「군형법」의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수사에 금융정보(FIU)의 접근과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동법 제7조 4항의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민안전처, 경찰, 검찰,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의 7개 기관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이 누락됨으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범죄와 안보관련 수사의 난항,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테러조직의 검거 실패, 그리고 불법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7조 4항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https://kookje.co.kr>: 2015. 5. 26.
 [2] Egmont Group, 「Information Paper」, Egmont Group, 1999.
 [3] <http://www.egmontgroup.org>: 2015. 5. 27.
 [4] 한영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월간법제, 10: 51-60. 2001.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0-04, 2000.
 [6]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자료집, 2007.
 [7] 국가정보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취지」, 국가정보원 자료집, 2014.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운영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00-03, 2000.
 [9] 김혜정, “독일의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78, 40-41, 2003.[10] 김용욱, “자금세탁죄의 개정방향: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20(4): 229-252, 2009.

[11] <http://www.kofiu.go.kr/index.jsp>: 2015. 6. 7.

[12] <http://www.treasury.gov/fincen>: 2015. 6. 8.

[13] <http://www.fsc.go.kr>: 2015. 6. 8.

[14] <http://www.law.go.kr>: 2015. 6. 9.

[저자소개]



이 대 성 (Lee, Dae Sung)

1997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0년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2004년 동국대학교 형사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email : dorian3145@daum.net



안 영 규 (Ahn, Young Kyu)

2001년 동국대학교 법학사
 2008년 동국대학교 경찰학석사
 2012년 동국대학교 경찰학박사
 現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email : ayk93@hotmail.com